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2738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퍼م 담당변호사 김평찬

피 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6. 18. 체결된 상계계약을 7,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설 유지 및 보수업을 하는 회사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센터 2층 부분을 임차하여 'F체험관'(이하 '이 사건 체험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회사다.

나. 원고는 2017. 5.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체험관의 구조보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00만 원, 공사기간 2017. 5. 8.부터 2017. 6.

21.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9. 공사를 완료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 5. 26. 2,000만 원, 2018. 7. 3. 500만 원, 2019. 8. 19.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8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1.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체험관을 3년간, 연 차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차임 채권(이하 '이 사건 차임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마.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8. 6. 18. 이 사건 체험관 운영기간연장 및 장소사용료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이 사건 차임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상계계약'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상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사실상 이 사건 약정금 채권뿐이었고,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및 이 사건 차임 채무 등 합계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항변의 내용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계계약 사실을 늦어도 2019. 7. 22.경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0. 20. 이 사건 소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피고가 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와 계약하고 선지급하면 추후 구청 예산으로 상계처리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상계계약의 존재 및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상계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상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계계약은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상계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계계약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차임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로, 피고가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수익자의 악의

이 사건 상계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상회복청구의 가부

피고가 이 사건 상계계약으로 취득한 수익은 금전 기타의 재물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소멸

내지는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인데, 이 사건 상계계약이 취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부활하여 소외 회사가 이를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그 결과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수익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셈이 되므로,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